

1. 제정이유

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을 한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이 '20. 5. 1.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,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법률과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드론의 정의 명확화(안 제2조)

향후 상용화될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운송수단(UAM)과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(UTM)을 통한 유인드론 자동관제 시대까지 고려하여, 그간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'드론'을 명확히 규정함.

나.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(안 제3조)

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·도지사가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.

다.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원(안 제4조)

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·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.

라. 드론 첨단기술의 지정신청 등(안 제5조)

드론 첨단기술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.

마.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원(안 제6조, 제7조)

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원 가능 사항을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.

바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(안 제8조)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서 “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(이하 “발동기”라 한다)가 1개 이상일 것
2.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총 탑승좌석수(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종자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조종사 좌석수를 포함한다)가 9개 이하일 것

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외부로부터 원격 조종이 가능한 비행체
2.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으로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
3.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·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

4. 한 명의 조종자가 조종하는 다수의 비행체

③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“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”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)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.

1. 입지의 적정성 검토서
2. 구역 등의 중첩여부 검토서
3.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결과에 관한 서류
4. 지원특화분야 선정 결과에 관한 서류 및 지원특화분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
5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유예·면제 또는 간소화를 희망하는 사항의 필요성 검토서
6.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운영계획서
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4조(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원)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드론 운행 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비행하는 자
2. 드론 기술 표준화 및 드론시스템 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비행하는 자
3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5조(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)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(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제6조(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정부의 드론관련 사업을 통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실적
2. 해외시장에 진출한 실적
3. 드론 관련 특허 및 논문 보유 실적
4.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 기술 보유 실적
5. 드론 관련 상생사례 및 드론 활용 우수사례

② 제2항에 따른 평가 배점 및 비율 등 기타 우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7조(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

2.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
3.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
4.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공인 인증 마크 부여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 사항의 행정 간소화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·평가·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)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), 정관(법인만 해당한다) 또는 그 밖에 드론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2.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
3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
4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
5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(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「전자정부

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5조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④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, 교육훈련 실시, 예산 지원,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수수료) ① 법 제22조에 따라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면제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,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

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다. 다만,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
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
사무소 소재지		

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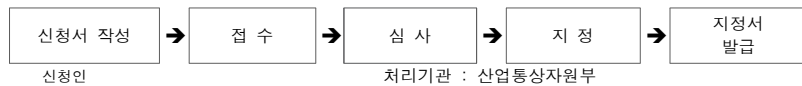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귀하

제출서류	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. 석재자원 개발 및 이용 관련 연구실적 1부 6. 신청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근거규정 및 정관 또는 학칙의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
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
사무소 소재지		

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활성화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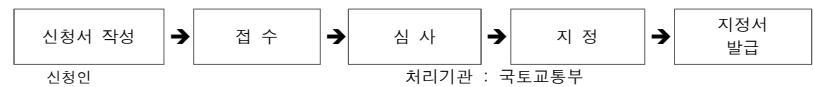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
귀하

제출서류	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. 석재자원 개발 및 이용 관련 연구실적 1부 6. 신청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근거규정 및 정관 또는 학칙의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(단체)명:

2. 사업자등록번호:

3.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
4. 주소: (전화번호:)

5. 사무소 소재지:

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

접수일자	지정번호	발급일자	신 청 인		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			기관명	대표자 성 명	주 소		